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4. . (제 회)	

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4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영 주차장 내 야영·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주차장법」이 개정(법률 제 20392호, 2024. 3. 19., 일부개정, 2024. 9. 20. 시행)됨에 따라, 야영·취사 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한편, 주차장, 주택, 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나,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 활성화를 통한 주차장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설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부분 면적 비율 제한 완화(안 제1조의2제1항)

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설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‘70퍼센트 이상’에서 ‘60퍼센트 이상’으로 완화하여 규정

나.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행위,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(안 별표 6)

공영 주차장에서 야영행위,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시 과태료 부과액을 1차 위반 30만 원, 2차 위반 40만 원, 3차 이상 위반 50만 원으로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1항 단서 중 “70퍼센트”를 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경우: 60퍼센트
2. 제1호 이외 지역에 위치한 경우: 70퍼센트

별표 6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카. 법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,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30조제3항 제1호	30만원	40만원	50만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관한 적용례)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건축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·인가 등을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「건축법」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
제1조의2(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) ① 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”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. 다만,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(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. 이하 “단독주택”이라 한다), 공동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<u>70퍼센트</u> 이상인 것을 말한다.	제1조의2(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-----. <u> </u> -----.

<u><신 설></u>	1. <u>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</u> <u>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경</u> <u>우: 60퍼센트</u>
<u><신 설></u>	2. <u>제1호 이외 지역에 위치한 경</u> <u>우: 70퍼센트</u>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